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3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송달 관련 정보 미제공 처벌〉

■ 정청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50호)

2024.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청래 · 김용민 · 안도결 · 김현정 · 이병진 · 김성환
이건태 · 허성무 · 강선우 · 이원택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8. 30.

3. 회 부 일 : 2024. 9. 2.

※ 의안번호 : 345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주요 현안·국민청원 등의 경우 국민의 뜻에 따라 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청문회 출석을 위한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함)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하여 주소·전화번호·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제공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벌칙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여 제재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생략)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② ----- ----- <u>방해한 자,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u> -----.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¹⁾은 증인등의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⑦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증인등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
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전기통신
사업법」의 규정²⁾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해당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하여 제공하
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은 2017년 3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
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
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
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
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월 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었는데, 개정 취지는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 등을 위한 증인등의 출석요구 과정에서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 등 기초적인 개인정보 파악이 어려워 송달이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인등에 대한 출석요구서 송달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음.³⁾

이와 같은 증인등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제공 요구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개정안은 증인등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하여 주소·전화번호·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제공 요구를 받고도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처벌 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마련함으로써, 증인등의 출석요구서 송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국회의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3) 참고로, 2017년 3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 개정 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7건의 개정안을 심사한 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였는데, 7건의 개정안은 모두 송달 관련 정보 미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며,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2017. 2. 21.)에서도 해당 제재 규정과 관련한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벌칙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벌칙규정은 증인등의 출석을 방해한 자는 처벌⁴⁾하면서도 증인등의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방해한 자는 처벌하고 있지 않음.

즉, 직접적으로 증인등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도 간접적으로 증인등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형벌의 균형성 측면과 가벌성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아울러,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⁵⁾은 증인의 주소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예정하고 「민사소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공시송달) ① 제5조제1항의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증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소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3.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4.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국회게시판 게시

2. 관보·국회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공시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증인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송법」에 따른 통상의 송달방법으로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의 보충적 송달방법으로 ‘공시송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법정형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등의 출석을 방해한 자 등에게 적용되는 ‘불출석 등의 죄’의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불출석 등의 죄를 적용받는 위반행위와 개정안에 따른 위반행위는 그 양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유형에 상응하는 적절한 법정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표-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불출석 등의 죄

구성요건		법정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현행)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현행)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현행)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현행)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현행)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개정안)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셋째,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은 시행일을 ‘ 공포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⁶⁾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7

6)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